## 비조치의견서 (☑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	담당 부서	IT·금융점	정보보호단	담당자 (직위, 성명)	김동일 선임조사역	연락처	02-3145-7418
요청대상 행위	□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·개발·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(이하 '전산센터 단말기')를 내부 업무용시스템과의 연결구간을 차단하고, 내·외부망과 방화벽으로 각각 차단된 가상PC(VDI)를 통해 전산실 내 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						
판단	□ 귀사가 구성하고자 하는 가상PC가 '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, 개발,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'에 해당할 경우 외부통신망 과의 연결 구간 및 내부 업무용 시스템과의 연결 구간을 각각 차단한다면 시행 세칙 제2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예외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.						
판단이유	세직 제2소의2 제2항 제4호에서 성한 예외규성을 순수한 것으로 보입니다. □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해킹 방지를 위해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센터 단말기를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나(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), ○ 전산센터 단말기와 외부통신망 및 내부 업무용시스템과의 연결 구간을 각각 차단한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(동 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 제4호). □ 전산센터 단말기를 내·외부망과의 연결구간이 각각 차단된 VDI로 구성한 다면 망분리 예외를 규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 제4호를 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, 내부망과 차단된 단말기로 위 VDI에 접속하더라도 내·외부망과는 여전히 차단되어 망분리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○ 다만 비인가자의 내부망 접속 방지, 통신구간에 대한 암호화 등 정보유출 및 악성코드 감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의 수립·운영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

- \*\* **비조치의견서의 효력**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항· 제2항 참조)
 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
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